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1. 9 선고 2021가단1216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10. 5.

판 결 선 고 2021. 11. 9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9,211,434원과 그 중 2,146,485원에 대하여는 2021. 4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.9%의, 2,809,292원에 대하여는 2021. 4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8. 18. 체결된 매매계약을 9,211,4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

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9,211,43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이재희

별지